

2020 한국보험학회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10시 ~ 17시

◎ 장소 세션별 webinar(zoom 회의실)

◎ 주최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Korea Risk Management Society

◎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Life Insurance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韓國保險學會



목 차

● 인사말	1
● 발표세션	2
● 세션별 발표논문 초록	7
- 세션 I 보험경제	9
- 세션 II 보험계리	15
- 세션 III 보험법 / 규제	21
- 세션 IV 보험경영	27
- 세션 V 리스크 관리	33
- 세션 VI 연금	41
- 세션 VII FIS	47
●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53
● 『리스크관리연구』 연구윤리규정	59

사랑하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한국보험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2021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덕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동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가 공동 개최하게 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리스크 관리와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대한민국에 리스크 관리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환경 경제 사회 정치외교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재난급 리스크에 여하히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대한민국과 각 조직의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리스크 관리 사회 구축에 앞장 서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귀한 논문을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시는 회원분들과 사회자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정보 공유의 장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장동한 한국보험학회 회장

성주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오전 세션

전체진행: 남상욱 교수(서원대,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개회

09:50-10:00	등록 / 개회
10:10-12:00	오전세션(Ⅰ~Ⅲ)
13:30-15:30	오후세션(Ⅳ~Ⅶ)
15:30-16:40	특별세션(FIS)
16:40-17:00	연구윤리교육(한국보험학회 및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편집위원회)
17:00	폐회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Ⅰ 보험경제

<https://cau.zoom.us/j/6941353919?pwd=aXZMS1FMN0phNmRpYUhyR0x3MS9mQT09>

회의 ID: 694 135 3919

사회 : 허연 교수(중앙대)

10:10-10:30	손실 경감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때 최적 보험계약 발표: 이민하(성균관대) · 이항석(성균관대) · 홍지민(숭실대)
10:30-10:50	Is Insurance an Inferior or a Giffen Good? 발표: 김경선(서울대 증권 · 금융연구소) · 홍지민(숭실대).
10:50-11:10	Insurance and economy in a life cycle model 발표: 손지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항석(성균관대)
11:10-11:30	산재보험과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산업 간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발표: 김선현(고려대 박사과정) · 김창기(고려대)
11:30-11:50	종합 정리 및 Q&A

세션 II 보험계리<https://zoom.us/j/6603211639?pwd=VE5RWld5WHpTRlBhMGhiRjgreEp4QT09>

회의 ID: 660 321 1639

사회 : 이항석 교수(성균관대)

10:10-10:30	보험료의 추가납입에 대한 동적 계약자행동에 관한 연구 발표: 오홍석(한양대 석사과정 삼성생명) · 심현우(한양대) · 박성순(삼성생명) · 최양호(한양대)
10:30-10:50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포트폴리오에서의 보험료 예측 발표: 안재윤(이화여대) · Rosy Oh(KAIST) · Dan Zhu(Monash Univ.)
10:50-11:10	리베이트 배리어 옵션과 지수연동형연금 발표: 이가은(성균관대 박사과정) · 이항석(성균관대) · 정힘찬(Simon Fraser Univ.)
11:10-11:30	의존성을 가진 복합 위험 예측 모델 발표: 정힘찬(Simon Fraser Univ.) · Emiliano A. Valdez(Univ.of Connecticut)
11:30-11:50	종합정리 및 Q&A

세션 III 보험법 / 규제<https://us02web.zoom.us/j/5819536115?pwd=a01QZEc2dG9zbnY0cVNBT1kxZmNlZz09>

회의ID: 581 953 6115

사회 : 김대환 교수(동아대)

10:10-10:30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발표: 맹수석(충남대)
10:30-10:50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적립기금에 대한 연구 발표: 백혜연(창원대)
10:50-11:10	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발표: 전한덕(전주대)
11:10-11:30	자유무역협정 관점에서 본 공제규제의 문제점 발표: 최창희(보험연구원)
11:30-11:50	종합정리 및 Q&A

오후 세션

세션 IV 보험경영

<https://yonsei.zoom.us/j/5909344852>

회의ID: 590 934 4852

사회 : 이상림 교수(목포대)

13:30-13:50	4차산업 혁명에 따른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에 대한 연구 발표: 박은엽(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연구센터) · 김흥기(창원대)
13:50-14:10	한국과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비교 연구 발표: 한상용(보험연구원) · 문혜정(보험연구원)
14:10-14:30	파라메트릭 보험 사례 연구 발표: 남상욱(서원대)
14:30-14:50	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와 보험회사 경영성과 간 관계 연구 발표: 김대환(동아대) · 정세창(홍익대)
14:50-15:10	종합정리 및 Q&A

세션 V 리스크 관리

<https://us02web.zoom.us/j/5819536115?pwd=a01QZEc2dG9zbnY0cVNBT1kxZmNlZz09>

회의ID: 581 953 6115

사회 : 이순재 교수(세종대)

13:30-13:50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이용변화에 대한 연구 발표: 이현복(전주대) · 이호용(국민건강보험공단)
13:50-14:10	원격보건과 보험 발표: 김창기(고려대) · 톰슨 에브라임과시(고려대 박사과정)
14:10-14:30	미국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 및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발표: 정광민(포항공대)
14:30-14:50	종신보험 유동화(전매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효과에 관한 연구 발표: 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 성주호(경희대) · 신동건(경희대 박사과정)
14:50-15:10	보험소비자의 불만경험이 부정적 감정, 불평행동, 부정적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 이찬희(동덕여대) · 이유미(성균관대) · 최건호(동덕여대)
15:10-15:30	종합정리 및 Q&A

세션 VI 연금<https://zoom.us/j/9098484354>

회의ID: 909 848 4354

사회 :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13:30-13:50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정책연금상품의 합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발표: 마승렬(손사경영연구소)
13:50-14:10	1인 가구 연금보유에 따른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가구구성원별 비교분석 및 1인 가구 연금보유별 종단연구 중심 - 발표: 박준범(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 김성일(CGGC)
14:10-14:30	크고 부정적인 경제충격을 고려한 최적 연금 전략 발표: 박세영(Notting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14:30-14:50	개인연금을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산정의 설계는 적절한가? - 기초연금의 개인연금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최재윤(성균관대 박사과정)
14:50-15:10	종합정리 및 Q&A

세션 VII FIS<https://yonsei.zoom.us/j/5909344852>

회의ID: 590 934 4852

사회 : 남상욱(서원대)

15:10-15:30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강병갑 · 한유진 · 손승명(목포대)
15:30-15:50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인식조사 발표: 박수연 · 박준석 · 김경빈(순천향대)
15:50-16:10	보험 산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 발표: 진유숨 · 고나현 · 조성희(동서대)
16:10-16:30	2030세대 보험 인식 개선 및 가입 활성화방안 -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를 중심으로 - 발표: 이지현 · 소지원 · 최창순(세종대)
16:30-16:40	종합정리 및 Q&A

16:40-17:00 연구윤리교육

17:00 폐회

세션별 발표논문 초록



세션 I 보험경제



발표자	성명	이민하
	소속	성균관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손실 경감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때 최적 보험계약
	영문	Optimal insurance under moral hazard in loss reduction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홍지민(숭실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손실 경감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때 최적 보험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전부 보험일 때는 한도까지가 최적이고 부분 보험일 때는 그 이상에서 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부분 보험이 최적일 때, 효용함수와 손실 분포의 형태에 따라 계약자의 보험금은 손실에 대해 convex하거나 선형, 또는 concave한 형태를 가진다. 공제의 경우 보험금이 손실에 대해 convex한 경우에만 최적 보험에 존재한다. 보험금이 손실에 대해 convex하거나 concave한 경우 고정급여를 지급하기 한다. 손실 분포가 linear exponential family에 포함될 때 보험금은 IARA와 CARA 하에서는 손실에 대해 concave한 반면, DARA 하에서는 convex한 것을 알 수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경선
	소속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논문제목	한글	Is Insurance an Inferior or a Giffen Good?
	영문	Demand for Insurance under a Two-argument Utility Framework
공동연구	홍지민(숭실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소득과 비금전적(non-monetary) 자산(건강)에 의존하는 2-요인 효용함수 하에서 보험의 소득탄력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보험의 정상재(normal good), 열등재(inferior good) 및 기펜재(Giffen)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보험수요에 대한 소득효과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위험회피성향(risk aversion)과 상관회피성향(correlation aversion)에 의존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는 감소절대위험회피성향(DARA) 하에서도 보험이 열등재이거나 정상재일 수 있으며, 결코 기펜재가 아님을 보였다.</p>	
Memo		

발표자	성명	손지훈
	소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영문	Insurance and economy in a life cycle model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This paper proposes a new type of overlapping generation (OLG) model by incorporating insurance into Gertler's (1999) life-cycle model. Despite the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most economic models overlook the impact of insurance on the economy.</p> <p>Unlike traditional economic models, our proposed model can analyze the impact of nonlife and life insurance on economic agents' life cycle behaviors and the economy in a steady state. The proposed model reflects a more realistic population structure by modifying the basic assumptions about population composition and transition probabilities. As the possibility of workers' death is imposed, workers' conditions are diversified, and the risk adjustment factor in a worker-decision problem is changed. It is possible for dependents to receive inheritance and death benefits from life insurance purchases in the event of workers' death. This model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cognize losses from particular financial events that existing economic models do not recognize.</p>	
Memo		

발표자	성명	김선현
	소속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산재보험과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 산업 간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영문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Job Satisfaction of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he Cross-industry Labor Mobility
공동연구	김창기(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이 연구는 산재 근로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이 산재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제2차 코호트 산재보험조사패널 자료를 이용하며, 산재 요양종결자의 취업 형태에 산업 특성이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산업 간 노동이동이라는 새로운 주요 요인을 밝혔다. 분석 결과, 산재 근로자가 다른 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산업 내에서 재취업하는 경우보다 해당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 정도 그리고 퇴직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은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 및 피드백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p>	
Memo		

세션 II 보험계리



발표자	성명	오홍석
	소속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석사과정, 삼성생명
논문제목	한글	보험료의 추가납입에 대한 동적 계약자행동에 관한 연구
	영문	Dynamic Policyholder Behavior for Base Premium and Additional Premium Payment –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 -
공동연구	심현우(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박성순(삼성생명) 최양호(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국내 보험업계는 회계의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인 IFRS17의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IFRS17은 부채평가 시 보험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보증옵션의 현금흐름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해지, 중도인출 등 여러 가지 계약자행동 중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추가보험료 납입행동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보험료 모형화에 접근하는 모형화틀을 제안하며, 이 틀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보험료, 추가보험료, 총보험료 동적납입률 모형을 제시한다. 그런 후,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인 변액유니버설증신보험을 대상으로 그러한 계약자행동 모형에 따른 최저중도인출금보증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평가하고, 동적납입률 모형이 보증비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보증비용의 민감도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기본보험료 동적납입률 모형만 반영하였을 때에 대비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동적납입률 모형까지 반영했을 때의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p>	
Memo		

발표자	성명	안재윤
	소속	이화여대 통계학과
논문제목	한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포트폴리오에서의 보험료 예측
	영문	Deep Learning Portfolio Forecasting: An Insurance Application
공동연구	Rosy Oh(KAIST) Dan Zhu(Monash University)	
논문초록 (Abstract)	<p>예측에 있어 모형의 가정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에 의해 정확한 예측모형의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료의 경우, 금융관련 법규 등 다양한 제약에 의해 모델에 의존하는 예측모형이 우선시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에 의존하는 예측모형의 경우 예측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존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특히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험가입자가 많은 경우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통적인 보험산업에서는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Credibility premium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근사치 추정방법을 고안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Least Square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에 인공지능학습법을 적용하여 모델에 의존하는 예측모형에서 빠르고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법을 제시하였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가은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리베이트 배리어 옵션과 지수연동형연금
	영문	Pricing Rebate Barrier Options with Applications to Equity-Indexed Annuities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정힘찬(Simon Fraser University)	
논문초록 (Abstract)	<p>이 논문에서는 배리어를 일반화 시켰을 때의 리베이트 배리어 옵션 공식을 유도하고 이를 응용한 EIA, ELS상품 등을 예시로 제공한다.</p> <p>리베이트 배리어 옵션은 기초자산이 배리어를 터치할 때 보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배리어의 형태가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경우에 대한 공식은 선행연구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배리어가 일정할 때뿐만 아니라 piecewise constant인 경우의 공식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의 배리어도 근사적으로 응용하여 해당 옵션가격을 구할 수 있다.</p> <p>기존에는 Knock-out 배리어 옵션일 때,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공식을 응용하면 EIA상품과 ELS상품에도 배리어를 일반화하여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IA상품에서 연금 개시 전에 일정 수익률을 도달하였을 때 보상 해주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원금보장형 Knock-Out ELS 등에서 상방배리어 초과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에도 응용할 수 있다.</p>	
Memo	.	

발표자	성명	정힘찬
	소속	Simon Fraser University
논문제목	한글	의존성을 가진 복합 위험 예측 모델
	영문	Predictive compound risk models with dependence
공동연구	Emiliano A. Valdez(University of Connecticut)	
논문초록 (Abstract)	<p>총사고금액을 빈도 및 심도로 나누어 추정하는 이원회귀모형은 순보험료를 예측하기 위한 보험 계리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빈도와 심도는 전통적인 이원회귀모형에서 독립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해당 가정은 실제 데이터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p> <p>본 논문은 기존 이원회귀모형의 독립성 가정을 완화한 보험료 산출 공식을 제시하며, 이 일반화된 보험료 공식은 빈도부분의 보험료, 심도부분의 보험료, 그리고 빈도와 심도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의존함수로 구성된다.</p> <p>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형은 해석이 쉽고 즉시 적용가능한 보험료 공식을 제공함으로써 반복자료를 사용한 보험료 산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p>	
Memo		

세션III 보험법 / 규제



발표자	성명	맹수석
	소속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한글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영문	Improvement of Penalty Surcharge System on according to Violations of Basic Document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부과 목적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 이득(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향후 위반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있음. -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8호, 9호, 10호 위반시 기준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부당이익이나 금융소비자 등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세부유형까지 연간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p>□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규정은 보험법·은행법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각 법률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려 <별첨 2>에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일반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세부행위별로 금융소비자/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하여 법정부과비율 이내(50% 이내)에서 차등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위반행위 내용 중 “위반행위의 동기”를 업법의 목적(재무건전성, 신용질서 등)에 맞게 수정하거나, “고의적/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는 방안 검토 등 	
Memo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발표자	성명	백혜연
	소속	창원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논문제목	한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적립기금에 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reserve fund for the medical dispute medication system.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의료분쟁조정제도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이다.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기금은 정부가 아닌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재원 마련 방식이나 재원 운용에 대한 원칙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의료과실보험과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민영보험과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비교하여 적립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영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 및 보상한도액 설정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p>	
Memo	신진학자 연구과제	

발표자	성명	전한덕
	소속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영문	A study on the exclusive belongingnes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solicitor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약10% 수준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달리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가입율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은 보험회사 등 사업주의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쿠팡 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즉 '전속성'이 강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p> <p>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적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p>	
Memo	선도연구과제	

발표자	성명	최창희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자유무역협정 관점에서 본 공제규제의 문제점
	영문	Possible Conflicts between Korea's Cooperative-Insurer Regulations and Free Trade Agreement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에는 38개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78개 공제보험자가 존재하는데 이들 공제보험자들은 대부분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공제보험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규 공제보험자에게 높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공제보험자와 보험회사에 규제차익을 조성하고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자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현행 한국의 공제보험 규제 체계가 자유무역협정(특히 외국계 회사에 대한 공정대우)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제보험자가 일반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에 따라 규제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제관련 개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제보험 규제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p>	
Memo		

세션Ⅳ 보험경영



발표자	성명	박은엽
	소속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연구센터, 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4차산업 혁명에 따른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에 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Insurance Industry Competi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공동연구	김흥기(창원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보험산업 국제경쟁력을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요인이 비선형적으로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은 현시비교위위지수를 기초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국내사 대외경쟁력과 외국사 대내경쟁력을 측정·사용한다. 4차산업혁명 변수는 인터넷 사용자비율, R&D, 산업 및 고용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지수를 결정변수로 설정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니계수가 높을수록(소득불평등 완화)국내사 대외경쟁력과 외국사 대내경쟁력에 긍정적이 충격을 준다. 인터넷 사용자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내사의 해외경쟁력에 긍정적인 충격을 주나 인터넷 사용자비율이 낮은 국가는 국내사 대외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양(+)과 음(-)의 충격은 비선형적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음(-)의 충격이 국제경쟁력에 더 크게 변화시킨다. 양(+)의 R&D 투자 충격은 생명보험의 국제경쟁력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비선형적으로 음(-)의 R&D 투자는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p>	
Memo	2020선도 연구과제 (2020-6)	

발표자	성명	한상용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한국과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비교 연구
	영문	CEO Compensation in Korea: Is It Different from the US? A Comparison between Korean Non-life Insurance Firms and U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Firms
공동연구	문혜정(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본 논문은 국내 손해보험회사에서 최고경영자(CEO) 보상체계의 구조와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자보상체계와 비교하여 국내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국내 보험회사에서 CEO의 연령은 기본급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고정보수인 기본급에 비해 보너스와 같은 성과보수는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영자 보상의 구성과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CEO 보상의 구조와 수준에 있어 커다란 차이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자보상에서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은 미국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한국 손해보험회사들은 경영자 보상의 설계에 있어 성과와 연계된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야 함을 제시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남상욱
	소속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논문제목	한글	파라메트릭 보험 사례 연구
	영문	A Study on Parametric Insurance Structure and Case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급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서울과 폭설 등 기후 위기 직면 등 우리가 맞서야 할 리스크는 더 복잡해지고 또 험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춘 보험상품을 적시에 개발, 공급하기는 더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임.</p> <p>특히, 전통 보험상품만으로는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보험상품으로 리스크를 담보하더라도 보험수요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두터운 보장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protection gap이 커지고 있음.</p> <p>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보험보장 틈새를 메우고, 새로운 리스크, 그간 담보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보험 (Parametric insurance)의 구조와 실제 사례를 살피고, 현재 국내 보험 시장에 동 상품을 접지하는데 따른 현실적 제약 내지는 제한 요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제안함.</p>	
Memo		

발표자	성명	김대환
	소속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한글	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와 보험회사 경영성과 간 관계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ce on Insurance Agency and Performances of Insurance Company
공동연구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국내 보험 영업시장에서 설계사의 판매비중은 감소하는 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판매채널의 변화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공시자료를 활용해 판매채널의 변화와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실증 분석은 생명보험회사들과 달리 최근 들어 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p> <p>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설계사 대비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보험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사업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히려 대리점을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권한, 그리고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대리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p>	
Memo	선도과제지원	

세션 V 리스크 관리



발표자	성명	이현복
	소속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이용변화에 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Chang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Utilization According to COVID-19
공동연구	이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논문초록 (Abstract)	<p>2020년 1월 국내 시작된 코로나 19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종식을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 19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질환으로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에게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난다.</p> <p>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급여범위로 가진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이용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DB(2019년, 2020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이용 인정자의 특성(성, 연령, 지역, 소득 등)과 이용 장기요양기관 특성(요양, 목욕, 간호 등)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대해 단절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p> <p>연구결과 코로나19 발생 전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에 비하여 코로나19 발생 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신청과 인정이 어려워졌으나, 기존 사용자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창기
	소속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논문제목	한글	원격보건과 보험
	영문	Telehealth and Insurance
공동연구	툼슨 에브라임 과시(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이 연구는 원격진료 또는 원격보건과 보험과의 연관성 및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격 보건은 특히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법을 응용하여 원격 진료나 건강관리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보험업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격보건은 보험계약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망률을 개선할 것이다. 이는 보험사업자들의 손익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원격진료나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계약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원격보건의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계약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정광민
	소속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논문제목	한글	미국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 및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영문	The financial impact of data breach risk in the U.S. market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발생 및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30년간(1992년 ~ 2020년) 미국 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별 관측치들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크고 동종업계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쟁사들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이버상 공격자의 목표 수정이 발생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 여부가 재정적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금융산업에 속한 기업들(은행, 보험사)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비용의 크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손실 규모가 작은 사건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건수당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출 건수당 평균비용으로 손실액 추정 방식을 주로 고려한 기존 논문들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총 재정비용을 유출 사건으로 인한 순수 피해액(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체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또는 사이버 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p>	
Memo	2020년도 신진학자 연구지원	

발표자	성명	최경진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종신보험 유동화(전매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효과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Improvement Effect of Old-Age Income Utilizing Liquidation of Whole-life Insurance: Focusing on Life Settlement
공동연구	성주호(경희대학교) 신동건(경희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퇴가구의 약 60%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자녀재산 상속 목적으로 가입하던 종신보험도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활성화 된 미국은 긴급한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한 고령자 중심의 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도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2010년에 추진하였으나 피보험자에 대한 생명침해 위험, 보험회사 손익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매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기관의 생명보험 전매회사를 설립하고 전매허용대상 계약은 보험료를 완납하고 60세 이상 등 일정 연령에 도달한 종신보험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고령자 중심의 제한적인 전매제도가 도입된다면 공적 생명보험 전매회사는 전매금액을 일시금 위주로 지급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마련과 유산상속 니즈를 동시에 고려한 지급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콩정부가 운영하는 HKMC Annuity의 즉시연금 지급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HKMC Annuity는 성별·연령별로 연금월액이 납입보험료의 105%에 도달하도록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보증기간 안에 사망할 경우 사망시점까지 수령한 누적연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전매제도 도입 시 전매대금의 지급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신보험 상품의 60세, 70세, 80세 기준 보험료 완납 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월액을 산정한 결과 유산상속의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즉시연금 상품에 비해 높은 연금월액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전매대금을 가입자 니즈에 부합하는 지급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전매제도를 활용한 고령자의 노후소득 향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p>	
Memo	2020년 보험학회 선도과제지원	

발표자	성명	이찬희
	소속	동덕여자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보험소비자의 불만경험이 부정적 감정, 불평행동, 부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Effect of Dissatisfaction Experience of Insurance Consumer on Negative Effect, Complaint Behavior, and Negative Word of Mouth Intention
공동연구	이유미(성균관대학교) 최건호(동덕여자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보험거래에서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N=504)를 이용하여 불만경험이 부정적 감정, 불평행동, 그리고 부정적 구전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보험계약체결단계, 계약유지단계, 보상단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은 소비자의 욕설 등의 무례한 언행,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제기, 기납입보험료의 반환과 같은 가격보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비자의 불평행동 중에서 무례한 언행을 한 소비자만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 대한 부정적인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불만 경험이 부정적 구전에 미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p>	
Memo	지정연구과제	

세션VI 연금



발표자	성명	마승렬
	소속	손사경영연구소
논문제목	한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정책연금상품의 합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Reasonable Design of Policy Annuity Products Using Real Estate Asset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토지보상연금의 합리적인 상품 설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①농지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②농지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지연금과 균형을 이루는 월지급액이 농지이용 특성만을 고려한 월지급액 수준보다 더 높게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된 월지급액에 기초하여 농지의 미래가치(L_N)와 월지급액의 누적미래가치(FVA) 크기도 확인해 보았는데 $FVA > L_N$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료 효과와 농지연금의 비소구 옵션가치를 토지보상연금의 가격 결정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토지보상연금 공급자의 합리적 상품설계와 소비자들의 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Memo		

발표자	성명	박준범
	소속	(주)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논문제목	한글	1인 가구 연금보유에 따른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가구구성원별 비교분석 및 1인 가구 연금보유별 종단연구 중심 -
	영문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of preparing for old age by holding pension accounts in one person household
공동연구	김성일(박사, (주)CGGC 대표)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년간 데이터(2010~2019)중 65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구성원별 노후준비도(연금가입)와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노후준비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제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1인 가구 연금보유에 따른 노후준비 결정요인 패널 분석을 하였다. 특히, 결정요인 연구모형은 초기 8개의 경제변수(년소득/재산/부채/경제활동여부/근로능력정도/가족수입정도/주거지역/주거환경만족도)를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모델 적합도 검증을 거쳐 년소득/부채/근로능력정도 그리고 주거지역을 독립변수로 최종 선정하였다.</p> <p>분석결과, 노후준비도에 가장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로능력정도로 나타났으며, 년소득도 높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부채도 유의미하게 노후준비도를 높이는 관계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주거지역의 경우는 부(-)의 관계였지만 통계적 유의도를 갖지 못했다. 또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통한 독립변수들의 노후준비도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초기치로부터 지속적인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증대변화율을 보이는 것은 근로능력정도였으며, 부채도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다만, 주거지역의 경우 초기치는 정(+)의 값을 가졌으나 변화율은 부(-)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p>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하 1인 가구 노후준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근로능력정도가 분석되어졌으며, 이는 노후준비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채가 증대되면서 노후준비도도 향상되는 것은 부채증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이는 결국 노후준비도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p>	
Memo	선도과제 지원	

발표자	성명	박세영
	소속	Notting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논문제목	한글	크고 부정적인 경제충격을 고려한 최적 연금 전략
	영문	Optimal Annuitization Strategy with a Large, Negative Economic Shock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크고 부정적인 경제충격(a large, negative economic shock)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금 이론이 현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연금 소득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금 소득의 불확실성을 연금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포아송 점프 프로세스(Poisson jump process)를 통해 크고 부정적인 경제충격이 야기할 수 있는 미래 연금 소득의 감소를 모델링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과 소득 비율(wealth-to-income ratio)이 내재적으로 결정된 특정 임계치(threshold)를 넘어서는 순간 은퇴자가 자신의 자산과 소득 비율이 다시 임계치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연금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최적의 의사 결정임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크고 부정적인 경제충격을 고려했을 때 은퇴자의 최적 소비/저축(optimal consumption/savings) 및 투자(investment) 해법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최재윤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개인연금을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산정의 설계는 적절한가? - 기초연금의 개인연금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
	영문	Is the basic pension income measurement design appropriate including private pension?: Focusing on the crowding-out effect of basic pension on private pension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 장기저축보험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급하기 위해 개인들이 장기저축보험 가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이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 장기저축보험을 구축하고 주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연 소득 3,000~5,000만 원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급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축적된 자산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연금제도 간 적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	
Memo		

세션Ⅶ FIS



발표자	성명	강병갑
	소속	국립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영문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Act to Prevent Insurance Fraud
공동연구	한유진(국립목포대학교) 송승명(국립목포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나, 오히려 특별법 제정 후 보험사기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보험과 보험계약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보험사기의 가장 주된 원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보험사기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함께 외국의 문제 대처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행 특별법이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 등 특별법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특별법의 개선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지막에 제시하였다.</p>	
Memo	FIS 연구지원	

발표자	성명	박수연
	소속	순천향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인식조사
	영문	
공동연구	박준석(순천향대학교) 김경빈(순천향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는 여러 금융사태를 겪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제되던 기관별 규제 제도에서 기능별 규제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일부 삭제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들이 이전하면서 강화 혹은 변경 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경영전략적 측면, 소비자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와 공급자의 인식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두 입장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부류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단, 공급자는 블랙컨슈머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p> <p>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p>	
Memo	FIS지원과제	

발표자	성명	진유솜
	소속	동서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보험 산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
	영문	How to improve problems in the insurance industry.
공동연구	고나현(동서대학교) 조성희(동서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한국의 보험 산업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보험에 관한 관심은 현저히 낮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보험 컨설턴트를 통하는 방법 말고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가깝지만 멀다고 느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대부분 사람에게 보험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것이며,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지만, 보험의 전문 지식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주제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UCC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한 보험의 기본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험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며 중요하기에 10대 때부터 직접 응용하며 취업을 보험 관련 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SNS를 이용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로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화, 광고 영상을 통한 보험의 전반적인 입지와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바입니다.</p>	
Memo	FIS2020	

발표자	성명	이지현
	소속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논문제목	한글	2030세대 보험 인식 개선 및 가입 활성화방안 -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를 중심으로 -
	영문	How to improve insurance awareness and promote insurance demand for the 2030 generation: Focusing on the post-COVID19 society
공동연구	소지원(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최창순(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국내 20·30세대의 경우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부분이 가입하는 보험은 미니보험과 같은 단발성 가입이 잦고 정기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꺼리는 이유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보험업계에도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면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보험사들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20·30세대가 보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40·50세대와 비교하여 20·30세대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비대면 시장에 맞추어 보험업계가 20·30세대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인 '청년보험'과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 설명의 의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비대면 영업에 대하여 보험사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움을 줄 것이다.</p>	
Memo	FIS 지원과제	

『한국보험학회』 연구윤리규정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4년 4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으로(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보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해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다른 매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논문을 투고한다.
- ② 저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따르며, 편집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1.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 ⑥ 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는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 ④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심각한 연구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1.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등을 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될 때, 편집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다음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는다. 검토 결과 정직한 실수로 판명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2.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편집위원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표절 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제4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의 건의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학회사무국에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논문제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및 처리절차의 개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학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학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 종류로는 다음이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논문 철회문을 게재하여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3.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6.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7. 사법기관에 고발
- ③ 관련 기록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10조(사후관리대책)

-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의 조사내용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항의 재조사에 따른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 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도에 4월말 발간되는 『보험학회지』 심사 대상 논문부터 적용된다.

『리스크관리연구』 연구윤리규정



『리스크관리연구』 研究倫理에 관한 規定

제정 2008. 12. 31

개정 2015. 10.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발간하는 리스크관리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논문의 성격에 위배되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말하며, 저자는 이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제출한다.

-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심사 과정의 진실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 ③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그 혐의가 단순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실수로 판단되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재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 ④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분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제4조(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학문적·실무적 기여도 및 초록의 적절성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⑦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제보자 정보 보호)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의 권리보호)

-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관련 사항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처리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판정)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④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특히 연구부정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3.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13조(연구윤리 협약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윤리 협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윤리 규정의 수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도 12월말에 발간되는 리스크관리학회지 심사 대상 논문부터 적용된다.